



2016년도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안) [공개용]

2017. 1.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감사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근거	1
3. 감사중점사항	1
4. 감사대상기관	2
II. 감사결과 처분서	3

2016년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 지원 확대로 유치원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 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개선함으로써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유치원 운영 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점검과 연계하여 추진

2. 근거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점검 관련 워크숍('16. 10. 4.)
- 유치원 회계 급식 등 운영 실태점검 요청(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7209, '16.10.11.)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3. 감사 중점 사항

- 학비·보육료 수급관리, 예산의 정당한 사용 등 회계관리 실태
- 급식관리, 방과 후 운영
- 교구·원복 구입 등 각종 계약관리
- 위생·안전관리 실태

4. 감사 대상 기관

□ 감사 대상 기관(인천 6개원)

구분	소재지 (지역청)	유치원명	감사기간	감사인원
공립	서부	◇◇◇◇유치원	2016.10.18.~10.20.	4명
사립	동부	에듀피아유치원	2016.10.21.~10.26.	4명
	동부	송도국제유치원	2016.10.27.~11.01.	4명
	동부	글로벌레인보우유 치원	2016.11.03.~11.08.	4명
	서부	사랑샘유치원	2016.11.09.~11.14.	4명
	서부	청라새싹유치원	2016.11.15.~11.18.	4명

II 감사결과 처분서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원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에듀피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

제 목 : 통학차량 임차비용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 에듀피아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5.9.1.~2016.3.31.까지, 원장 ▲▲▲은 2016.4.15.~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행정실장 ♣♣♣은 2016.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3.)」에 의하면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각종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정당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통학차량 임차료를 집행하면서 [붙임] ‘통학차량 임차용역 집행현황’ 과 같이 계약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주)○○관광(대표 정○○) 등 정당한 채주가 아닌 차량 운전기사 ♠♠♠ 외 2명의 계좌로 6,60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 총 26,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차량임차용역 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붙임 통학차량 임차용역 집행현황 1부.

조치할 사항

□□□□유치원 이사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
- ③ □□□□유치원 행정실장 ♡♡♡

[붙임] 통학차량 임차용역 집행현황

연번	지급일	적요	지급액	정당 채주	실수령인	비고
1	2016.3.31	차량기사급여	1,650,000	㈜○○관광 (정○○)	김○○	청구서류 미징구
2	2016.4.29	차량임대료	1,650,000			
3	2016.5.27	차량임대료	1,650,000			
4	2016.6.29	차량임대료	1,650,000			
5	2016.3.31	차량임대료	2,500,000	㈜○○관광 (이○○)	김○○	청구서류 미징구
6	2016.4.29	차량임대료	2,500,000			
7	2016.5.27	차량임대료	2,500,000			
8	2016.6.29	차량임대료	2,500,000			
9	2016.3.31	차량임대료	2,450,000	㈜○○관광 (조○○)	윤○	청구서류 미징구
10	2016.4.29	차량임대료	2,450,000			
11	2016.5.27	차량임대료	2,450,000			
12	2016.6.29	차량임대료	2,450,000			
합 계			26,400,000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

제 목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 관련 합계표 미제출

관계기관 : 에듀피아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5.9.1.~2016.3.31.까지, 원장 ▲▲▲은 2016.4.15.~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행정실장 ◆◆◆은 2015.9.1.~2016.2.28.까지, 행정실장 ♣♣♣은 2016.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각급기관에서 물품의 구입, 공사 도급, 용역의 공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때에는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9.1.부터 2016. 6월말까지 [붙임] “(비전자)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접수 내역” 과 같이 거래상대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간이과세자의 간이영수증 미발급 1건 포함) 68회 총 98,733,229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취받은 (수기)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

[붙임] 2015년~2016년 (비전자)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접수 내역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이사장은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과세관련 합계표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등을 통보 예정

관련자 “주의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
- ③ □□□□유치원 행정실장 ◆◆◆
- ④ □□□□유치원 행정실장 ♠♠♠

[붙임] 2015년~2016년 (비전자)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접수 내역

1. (□□□□유치원) 2015년도 일반계산서 접수 내역

번호	작성일	사업자번호	상호	과세자 유형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15-12-24	105-16-XXXXX	해000	간이	200,000	0	200,000
2	2015-11-30	111-01-XXXXX	인000	일반	568,132	0	568,132
3	2015-12-29	111-01-XXXXX	인000	일반	1,416,947	0	1,416,947
4	2015-09-07	121-24-XXXXX	이000	일반	176,000	0	176,000
5	2015-09-15	121-24-XXXXX	이000	일반	11,000	0	11,000
6	2015-12-17	122-08-XXXXX	예000	간이	400,000	0	400,000
7	2015-09-30	122-31-XXXXX	월000	일반	377,000	0	377,000
8	2015-09-30	122-31-XXXXX	월000	일반	540,000	0	540,000
9	2015-10-30	122-31-XXXXX	월000	일반	455,000	0	455,000
10	2015-10-30	122-31-XXXXX	월000	일반	540,000	0	540,000
11	2015-11-30	122-31-XXXXX	월000	일반	494,000	0	494,000
12	2015-11-30	122-31-XXXXX	월000	일반	570,000	0	570,000
13	2015-12-30	122-31-XXXXX	월000	일반	559,000	0	559,000
14	2015-12-30	122-31-XXXXX	월000	일반	660,000	0	660,000
15	2015-12-30	122-31-XXXXX	월000	일반	598,000	0	598,000
16	2015-12-30	122-31-XXXXX	월000	일반	690,000	0	690,000
17	2015-12-14	123-35-XXXXX	키000	일반	299,000	0	299,000
18	2015-12-17	123-35-XXXXX	키000	일반	35,500	0	35,500
19	2015-09-25	131-34-XXXXX	코000	일반	200,000	0	200,000
20	2015-10-25	131-34-XXXXX	코000	일반	260,000	0	260,000
21	2015-11-18	131-34-XXXXX	코000	일반	260,000	0	260,000
22	2015-12-18	131-34-XXXXX	코000	일반	260,000	0	260,000
23	2015-12-09	131-85-XXXXX	(주)문000	일반	70,000	0	70,000
24	2015-09-30	140-03-XXXXX	신000	일반	297,550	0	297,550
25	2015-10-31	140-03-XXXXX	신000	일반	389,950	0	389,950
26	2015-11-30	140-03-XXXXX	신000	일반	391,600	0	391,600
27	2015-12-24	140-03-XXXXX	신000	일반	349,250	0	349,250
합 계					11,067,929	0	11,067,929

2. (□□□□유치원) 2016년도 일반계산서 접수 내역

번호	작성일	사업자번호	상호	과세자 유형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16-01-18	131-34-XXXXX	코000	일반	260,000	0	260,000
2	2016-02-18	131-34-XXXXX	코000	일반	260,000	0	260,000
3	2016-05-10	107-06-XXXXX	정000	일반	120,000	0	120,000
4	2016-01-29	111-01-XXXXX	인000	일반	1,391,374	0	1,391,374
5	2016-02-29	111-01-XXXXX	인000	일반	2,306,456	0	2,306,456
6	2016-03-31	111-01-XXXXX	인000	일반	5,140,760	0	5,140,760
7	2016-04-29	111-01-XXXXX	인000	일반	5,236,877	0	5,236,877
8	2016-05-27	111-01-XXXXX	인000	일반	5,750,226	0	5,750,226
9	2016-06-28	111-01-XXXXX	인000	일반	6,619,187	0	6,619,187
10	2016-04-05	119-03-XXXXX	가000	일반	16,304,260	0	16,304,260
11	2016-03-14	122-02-XXXXX	현000	일반	1,951,000	0	1,951,000
12	2016-02-29	122-31-XXXXX	월000	일반	630,000	0	630,000
13	2016-02-29	122-31-XXXXX	월000	일반	611,000	0	611,000
14	2016-03-29	122-31-XXXXX	월000	일반	3,546,000	0	3,546,000
15	2016-04-22	122-31-XXXXX	월000	일반	2,670,000	0	2,670,000
16	2016-05-25	122-31-XXXXX	월000	일반	2,670,000	0	2,670,000
17	2016-06-29	122-31-XXXXX	월000	일반	2,670,000	0	2,670,000
18	2016-06-29	122-31-XXXXX	월000	일반	3,726,000	0	3,726,000
19	2016-04-07	126-04-XXXXX	돌000	일반	33,000	0	33,000
20	2016-05-26	126-04-XXXXX	돌000	일반	90,000	0	90,000
21	2016-04-28	131-36-XXXXX	에000	일반	640,000	0	640,000
22	2016-05-27	131-36-XXXXX	에000	일반	640,000	0	640,000
23	2016-05-27	131-36-XXXXX	에000	일반	3,000,000	0	3,000,000
24	2016-06-25	131-36-XXXXX	에000	일반	640,000	0	640,000
25	2016-04-07	139-03-XXXXX	동000	일반	50,000	0	50,000
26	2016-01-28	140-03-XXXXX	신000	일반	264,000	0	264,000
27	2016-02-23	140-03-XXXXX	신000	일반	242,000	0	242,000
28	2016-03-31	140-03-XXXXX	신000	일반	712,800	0	712,800
29	2016-04-29	140-03-XXXXX	파000	일반	497,880	0	497,880
30	2016-05-31	140-03-XXXXX	파000	일반	427,680	0	427,680
31	2016-06-29	140-03-XXXXX	신000	일반	388,800	0	388,800
32	2016-06-27	161-81-XXXXX	열000	일반	1,958,000	0	1,958,000
33	2016-06-28	161-81-XXXXX	열000	일반	3,030,000	0	3,030,000
34	2016-04-29	265-31-XXXXX	동000	일반	360,000	0	360,000
35	2016-05-27	265-31-XXXXX	동000	일반	240,000	0	240,000
36	2016-03-23	397-09-XXXXX	오000	일반	6,400,000	0	6,400,000
37	2016-04-22	397-09-XXXXX	오000	일반	2,020,000	0	2,020,000
38	2016-05-25	397-09-XXXXX	오000	일반	2,020,000	0	2,020,000
39	2016-06-28	397-09-XXXXX	오000	일반	64,000	0	64,000
40	2016-06-29	397-09-XXXXX	오000	일반	2,020,000	0	2,020,000
41	2016-06-29	397-09-XXXXX	오000	일반	64,000	0	64,000
합 계					87,665,300	0	87,665,300

3. (□□□□유치원) 2015년도 세금계산서 접수 내역

번호	작성일	사업자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15-08-26	119-03-XXXXX	가000	10,411,182	1,041,118	11,452,300
2	2015-09-23	119-03-XXXXX	가000	815,091	81,509	896,600
3	2015-10-30	119-03-XXXXX	가000	1,474,546	147,454	1,622,000
합 계				12,700,819	1,270,081	13,970,900

※ 해당연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된 건은 제외

4. (□□□□유치원) 2016년도 세금계산서 접수 내역

번호	작성일	사업자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2016-01-20	119-03-XXXXX	가000	5,837,963	583,797	6,421,760
2	2016-03-09	119-03-XXXXX	가000	6,748,400	674,840	7,423,240
3	2016-04-15	119-03-XXXXX	가000	587,364	58,736	646,100
4	2016-05-16	119-03-XXXXX	가000	936,964	93,696	1,030,660
5	2016-05-20	119-03-XXXXX	가000	7,334,182	733,418	8,067,600
6	2016-05-27	119-03-XXXXX	가000	3,780,973	378,097	4,159,070
7	2016-06-03	119-03-XXXXX	가000	185,273	18,527	203,800
8	2016-11-27	119-03-XXXXX	가000	1,050,000	105,000	1,155,000
9	2016-03-31	140-03-XXXXX	신000	727,726	72,774	800,500
10	2016-04-29	140-03-XXXXX	파000	906,179	90,621	996,800
11	2016-05-31	140-03-XXXXX	파000	859,544	85,956	945,500
12	2016-06-29	140-03-XXXXX	신000	594,999	59,501	654,500
13	2016-06-28	206-19-XXXXX	팡000	300,000	30,000	330,000
합 계				29,849,567	2,984,963	32,834,530

※ 해당연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된 건은 제외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관계기관 : 에듀피아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5.9.1.~2016.3.31.까지, 원장 ▲▲▲은 2016.4.15.~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행정실장 ◆◆◆은 2015.9.1.~2016.2.28.까지, 행정실장 ♣♣♣은 2016.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5조(과세기간),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의하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및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뒷면 계속>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소득세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연말에 개인별로 정산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유치원 이사장은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속직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
- ③ □□□□유치원 행정실장 ◆◆◆
- ④ □□□□유치원 행정실장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

제 목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과세관련 합계표 미제출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5.3.1.~2016.5.10.까지, 원장 ♥♥♥은 2016.5.1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각급기관에서 물품의 구입, 공사 도급, 용역의 공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때에는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거래상대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아래[표]와 같이 22회 총 282,80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13건은 감사를 앞두고 최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사실이 있으며, 수취받은 (수기)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과세관련 합계표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등을 통보 예정

관련자 “주의요구”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② ●●●●유치원 원 장 ♥♥♥

[붙임]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사업자명(대표자)	사업자번호	번호	지출일	지출액	비고
뉴○○○○○○(박○○)	109-09-XXXXX	1	2015-03-30	11,440,000	
○○○○건축공사(김○○)	131-19-XXXXX	2	2015-11-16	9,000,000	
○○상사(김○○)	130-45-XXXXX	3	2015-05-29	5,880,000	
㈜○○유아(김○○)	128-86-XXXXX	4	2015-05-22	5,000,000	2016-10-25 세금계산서 (51,587,000원)발급
		5	2015-05-26	10,000,000	
		6	2015-06-23	3,300,000	
		7	2015-07-28	10,000,000	
		8	2015-11-26	9,000,000	
		9	2016-02-25	9,000,000	
		10	2016-06-22	5,000,000	
아○○○○○○(김○○)	778-19-XXXXX	11	2015-05-21	12,200,000	2016-10-25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유○○○○(신○○)	204-09-XXXXX	12	2015-03-01	12,000,000	
		13	2015-05-14	10,000,000	2016-10-24 전자세금계산서 (11,000,000원)
		14	2015-05-26	11,000,000	2016-10-24 전자세금계산서
		15	2015-08-28	15,000,000	2016-10-25 전자세금계산서발급
		16	2015-09-25	11,000,000	
		17	2015-11-26	20,000,000	
㈜청○○○○(지○○)	106-86-XXXXX	18	2015-03-01	46,000,000	
청○○○○○○(지○○)	131-26-XXXXX	19	2015-11-06	50,000,000	2016-10-0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교육(정○○)	333-81-XXXXX	20	2015-08-19	5,440,000	
		21	2015-08-19	5,340,000	
한○○○○○○(정○○)	134-26-XXXXX	22	2015-11-25	7,207,000	2016-10-25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000,000원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 지출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5.3.1.~2016.5.10.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따라 지출 전에는 지출금액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 3. 28. 급식재료구입비를 식재료 납품업체(ㄷㄷㄷ)에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금액 19,620,000원보다 1,000,000원이 많은 20,6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대금 지급 시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과다 지급된 1,00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시고,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계속>

관련자 “주의요구”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708,930원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5.3.1.~2016.5.10.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회계연도에 아래[표]와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 2건 총1,708,930원과 교사 개인 병원비 1,123,4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자	지출건명	지출액(원)	채주	비고
1	2015.07.16.	사회보험료 연체금	536,410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2	2015.08.25.	사회보험료 연체금	49,120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3	2015.11.16.	병원비 교사 이○○	1,123,400	이○○	
합 계			1,708,930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예산 목적외 사용된 1,708,93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시고,

【경고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 시설 무단 용도 변경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5.3.1.~2016.5.10.까지, 원장 ♥♥♥은 2016.5.1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사립 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항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내부 시설의 용도를 변경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16. 11. 1.)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무단 용도 변경 내역】

- 2층 및 3층 교실 안 자료실 4곳 → 화장실
- 4층 복도 일부 → 주방(확장)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변경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뒷면 계속>

【시 정】 시설의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가를 받으시고,
(또는 최종 인가 상태로 시설의 원상복구 조치)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② ●●●●유치원 원 장 ♥♥♥

일련번호	5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

제 목 : 수업료 등 반환 부적정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수입금 징수) 및 제31조(과오납의 반환)에 의하면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하고,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에 수업료 등을 반환하면서 [붙임] ‘수업료 등 반환 현황’ 과 같이 반환금 총 24,275,980원을 대상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반환 대상자가 아닌 직원(☐☐☐☐ 4건, ▣▣▣▣ 6건) 계좌로 송금한 후 대상자에게 반환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수업료 등 반환 시 대상자(채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붙임] 수업료 등 반환 현황(반환대상자와 수령인 불일치)

(금액단위: 원)

연번	일자	적요 및 반환액	송금액	수령인	반환대상자
1	2015-03-02	수업료과납환불 5,000,000	5,000,000	▣▣▣▣	장○○ 외 37명
2	2015-03-10	수업료과납환불 5,000,000	5,000,000	▣▣▣▣	
3	2015-03-13	수업료과납환불 3,000,000	3,000,000	▣▣▣▣	
4	2015-07-03	수업료과납환불 500,000	500,000	▣▣▣	김○○ 외 1명
5	2015-04-09	입학금환불금 270,000	3,119,500	▣▣▣▣	강○○ 외 16명
		수업료환불금 863,500			
		방과후비환불금 930,000			
		급식비환불금 660,000			
		다문화비환불금 396,000			
6	2015-07-02	입학금환불 300,000	2,377,950	▣▣▣	김○○ 외 5명
		원복비환불 212,000			
		수업료환불 470,950			
		급식비환불 1,230,000			
		다문화비환불 165,000			
7	2015-06-15	원복비환불 136,000	2,362,600	▣▣▣	김○○ 외 10명
		수업료환불 1,108,060			
		방과후비환불 124,940			
		급식비환불 536,000			
		다문화비환불 457,600			
8	2015-07-21	수업료환불 899,000	1,309,000	▣▣▣	김○○ 외 6명
		급식비환불 360,000			
		방과후비환불 50,000			
9	2015-07-27	입학금환불 750,000	886,000	▣▣▣	문○○ 외 4명
		원복비환불 136,000			
10	2015-08-13	입학금환불 300,000	720,930	▣▣▣	김○○ 외 4명
		원복비환불 68,000			
		수업료환불 101,620			
		방과후비환불 23,730			
		급식비환불 108,360			
		다문화비환불 119,220			

일련번호	6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경고

제 목 : 차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및 제11조(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의하면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학교(유치원) 세입예산 과목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급여 및 지출금액 부족 명목으로 원장 ♣♣♣와 설립자 ☒☒☒으로부터 [붙임] ‘차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 과 같이 251,550,000원을 차입 및 상환하면서 193,550,000원만 세입처리하고 58,370,330원은 미입금된 지출반납액과 상계 처리하는 등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을 세출과목의 상환금이 아닌 세입과목에서 반환처리하는 방법으로 세입·세출과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결산서에 차입금 및 상환금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차입금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금회에 한하여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일자	통장 입금액	장부 (수입)	통장 출금액	장부 [수입(반환)]	비고(세입누락 및 상계처리)
1	2015-05-13	64,000,000	64,000,000			
2	2015-05-29	70,000,000	70,000,000			
3	2015-05-29			50,000,000	-50,000,000	
4	2015-08-13			7,000,000	-7,000,000	
5	2015-09-04			15,000,000	-15,000,000	
6	2015-09-15			3,000,000	-3,000,000	
7	2015-10-07			12,000,000	-12,000,000	
8	2015-10-22			10,000,000	-10,000,000	
9	2015-10-29			15,000,000	-15,000,000	
10	2015-11-23			10,000,000	-10,000,000	
11	2015-12-10			1,000,000	-1,000,000	
12	2015-12-11	7,000,000	7,000,000	19,000,000	-19,000,000	
13	2015-12-23	4,000,000	4,000,000	10,000,000	-10,000,000	
14	2015-12-23	100,000,000	41,629,670			58,370,330
15	2015-12-31			3,000,000	-3,000,000	
16	2016-01-23			17,000,000	-17,000,000	
17	2016-02-12			15,000,000	-15,000,000	
18	2016-06-03	6,550,000	6,550,000			
19	2016-06-15			6,550,000	-6,550,000	
합계		251,550,000	193,179,670	193,550,000	-193,550,000	58,370,330

일련번호	7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

제 목 : 결산 업무처리 소홀

관계기관 : 송도국제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는 2015.3.1.~2016.5.10.까지, 원장 ♥♥♥은 2016.5.1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및 제11조(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에 의하면 학교(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과 차인잔액(불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미수액조서·차입금명세서·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부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6년 5월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을 3,101,952,822원으로 관할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2016. 10. 감사일 현재에는 세입·세출결산액을 3,052,793,669원으로 제출함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이 49,159,153원 차이나게 하는 등 결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935,592원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 글로벌레인보우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5.10.13.~2016.4.18.까지, 원장 ▽▽▽은 2016.8.3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설립자겸 사무직원 ★★는 2015.9.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 2016회계연도에 [붙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과 같이 설립자 개인 유류비 등 13건 총 935,592원을 예산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있다.

붙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1부.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된 935,592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시고,

【경고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② 유치원 원 장 ▼▼▼

③ 유치원 사무직원 ★★

[붙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내역

연번	지출일자	건명	지출액(원)	비고
1	2015.11.29.	주유대금	66,807	
2	2016.01.26.	주유대금	69,000	
3	2016.02.26.	주유대금	51,000	
4	2016.03.07.	주유대금	93,000	
5	2016.03.10.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부담금	103,320	개인부담금
6	2016.03.16.	주유대금	80,018	
7	2016.03.21.	주유대금	73,026	
8	2016.03.28.	주유대금	59,000	
9	2016.04.09.	주유대금	84,000	
10	2016.04.15.	주유대금	69,785	
11	2016.04.22.	주유대금	30,000	
12	2016.06.18.	주유대금	50,000	
13	2016.06.25.	주유대금	106,636	
합 계			935,592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경고

제 목 : 차입금 회계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 글로벌레인보우유치원

내 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및 제11조(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의하면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학교(유치원) 세입예산 과목과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에 급여 및 운영비 부족 명목으로 설립자 ★★★로부터 [붙임] ‘차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 과 같이 31,601,000원을 차입하면서 세입과목을 차입금이 아닌 잡수입으로 처리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28,000,000원은 세출과목 상환금이 아닌 세입과목의 잡수입에서 반환처리하는 등 세입·세출과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결산서에 차입금 및 상환금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붙임 차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 1부.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차입금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금회에 한하여 ‘기관경고’ 처분하오니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입금 및 회계처리 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일자	구분	계정과목	적요	수입
1	2015-09-09	세입	잡수입	★★★ 일시운영차입금	3,601,000
2	2015-09-18	세입	잡수입	★★★ 일시운영차입금	6,000,000
3	2015-10-01	세입	잡수입	차입금상환	-6,000,000
4	2015-11-25	세입	잡수입	★★★ 일시운영차입금	14,000,000
5	2015-11-26	세입	잡수입	★★★ 일시운영차입금	4,000,000
6	2015-11-30	세입	잡수입	★★★ 일시운영차입금	4,000,000
7	2016-01-11	세입	잡수입	★★★ 11월일시운영차입금상환	-22,000,000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 비 공 개 ()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 정 상 조 치 방 법		재 정 상 조 치 금 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 시설 무단 용도 변경

관계기관 : 사랑샘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4.1.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원감 ☒☒☒은 2014.1.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항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사(체육장 포함)의 평면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2016년 5월경 유리집을, 2016년 6월경 온실정원을 각각 건축하였으나, 감사당일 현재까지 유치원 시설 변경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에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변경 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한 인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시설의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가를 받으시고,
(또는 최종 인가 상태로 시설의 원상복구 조치)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계속>

관련자 “주의요구”

① ☆☆☆☆유치원 원 장 ☒☒☒

② ☆☆☆☆유치원 원 감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 유치원 적립금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 사랑샘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4.1.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원감 ☒☒☒은 2014.1.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3.)」에 의하면 적립금의 적립시기는 연도 말로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불임]과 같이 적립금 명목으로 2015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자동이체로 5,000,000원씩 총 55,000,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적립 및 사용계획과 기금설치 현황(매년도 예·결산서에 포함)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불임 적립금 내역 1부.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립금 운영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보고하고 매월 적립을 금하는 등 적립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사립유치원 회계매뉴얼」에 따라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시고 현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시고 그 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
- ② ☆☆☆☆유치원 원 감 ☒☒☒

[붙임] ☆☆☆☆유치원 적립금 내역

번호	회계연도	일자	적요	지출액	적립현황
1	2015	2015-12-21	12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은행명:○○은행 상품종류:상호부금 계좌번호: 7XX-XXXXX-XXXXX 월부금:5,000,000원 신규:2015.12.21. 만기:2018.12.21.
2	2015	2016-01-21	1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3	2015	2016-02-22	2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4	2016	2016-03-21	3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5	2016	2016-04-21	4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6	2016	2016-05-23	5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7	2016	2016-06-21	6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8	2016	2016-07-21	7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9	2016	2016-08-22	8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10	2016	2016-09-21	9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11	2016	2016-10-21	10월 유치원 적립금 지급	5,000,000	
합 계				55,000,000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

제 목 : 지출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 사랑샘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4.1.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원감 ☒☒☒은 2014.1.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2항에 따라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가 청구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과세유형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가 지급 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대표:한○○, 사업자번호:220-88-XXXXX, 2013.12.31. 폐업)와 2014. 7. 3. 클래식 프로그램 가입비 명목으로 2,500,000원, 2015. 2. 12. 클래식공연 연주회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는 등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발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폐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대표:이○○)에게 행정사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2회 총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뒷면 계속>

-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업활동에 필요한 교구구입, 업무추진비 등 소액 결제건에 대하여 유치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개인이 우선 지급토록 한 후 현금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총 78회)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사업자등록증 철저 확인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 개인 지출에 대한 현금지급을 금하고 유치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경고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미등록 사업자 거래내역 등을 통보 예정

관련자 “경고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
- ② ☆☆☆☆유치원 원 감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

제 목 : 감사자료 제출 소홀

관계기관 : 청라새싹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6.3.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설립자겸 사무직원 ▲▲▲은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은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칙」 제10조(감사자료 제출)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9116(2016.10.13.)으로 요청한 준비서류 중 [붙임]과 같이 감사당일 오전까지(2016.11.15. 09:00) 감사장에 비치해야 할 회계장부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지연 제출하여 연장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붙임 감사자료 제출 지연 목록 1부.

<뒷면 계속>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경고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
- ② ●●●●유치원 사무직원 ▲▲▲
- ③ ●●●●유치원 사무직원 ⊕⊕⊕

[붙임] 감사자료 제출 지연 목록

번호	감사장 준비 서류(11.15. 09:00)	제출일시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11.18. 15:00
2	각종 교육청지원사업(목적사업비) 관련 서류(교육청 공문(지침), 지원신청서, 지출증빙자료, 정산보고서 등)	11.15. 17:30
3	유치원 세입·세출 예산서/결산서	11.16. 09:00
4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거래명세서, 대금지급 계좌이체 내역, 신용카드 전표 등)	11.15. 14:00
5	징수부(예산과목별로 작성), 징수결의서	11.15. 17:00
6	수입일계표(영수필 통지서 및 이체 결과 첨부)	11.16. 09:00
7	회계장부 (현금출납부, 세입부, 세출부 등)	11.15. 17:00
8	유치원회계입출금관련계좌일체 (통장에과거거래내역없을시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확인원본) 출력)	11.16. 10:30
9	계약서철(시설공사, 교재·서적 등 구매, 임대차, 외부업체 위탁 특성화교육 관련 등), 견적서 철	11.16. 13:00
10	세무신고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11.17. 10:00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38,800,000원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시정

제 목 : 지출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 청라새싹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4.3.1.~2014.8.31.까지, 원장 ○○○은 2015.4.6.~2016.2.29.까지, 원장 ■■■은 2014.10.2.~2015.2.28.까지와 2016.3.1.~현재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설립자겸 사무직원 ▲▲▲은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는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에 따르면 각급기관에서 물품의 구입, 공사 도급, 용역의 공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을 때에는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대가 청구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과세유형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뒷면 계속>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㉞㉞㉞㉞㉞㉞(대표:한○○, 사업자번호: 220-88-XXXX, 2013.12.31. 폐업)에게 2014. 3. 18. 성악교육강사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는 등 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가 발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폐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상대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62회 총 340,568,750원을 지급하면서 [붙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수기)세금신고서 수취 내역’ 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지 않았으며, 수취받은 (수기)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않았고,

-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무직원 ㉞㉞㉞(설립자의 배우자) 소유의 토지¹⁾에 체험학습장 지상설치물 등을 설치하면서 [붙임]과 같이 유치원 교지가 아닌 체험학습장에 공사비로 14회 총 238,8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붙임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수기)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부.
2. 체험학습장 공사 내역 1부.
3. 체험학습장 사용 내역 1부.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매입처별 과세 합계표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체험학습장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통하여 적정 사용료를 지급하시고 유치원 교지가 아닌 체험학습장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공사비 238,800,000원은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시고, **【경고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미등록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등을 통보 예정

<뒷면 계속>

1) 경기도 ○○시 ○○면 ○○리 1XX-X

관련자 “경고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③ ●●●●유치원 원 장 ■■■
- ④ ●●●●유치원 사무직원 ▣▣▣
- ⑤ ●●●●유치원 사무직원 ⊕⊕⊕

[붙임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수기]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이월	거래일자	적 요	지급금액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비 고
1	2014-03-03	공사대금(농장)	5,500,000	대000	김○○	128-8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2	2014-03-31	교재비-킨○○○	3,056,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3	2014-04-29	교재비-킨○○○	3,155,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4	2014-05-02	원복구입	8,877,000	핑000	김○	204-25-XXXXX	2015-01-12 수기세금계산서 발행
5	2014-05-29	교재비-킨○○○	3,267,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6	2014-06-24	공사대금(농장)	20,000,000	이000	양○○	137-13-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7	2014-06-30	교재비-몰편	2,009,000	열000	문○○	122-19-XXXXX	수기계산서 발급(몰편)
8	2014-06-30	교재비-킨○○○	3,268,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9	2014-07-18	교재비-킨○○○	3,422,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10	2014-07-18	수영장직수공사	1,210,000	디000	임○○	131-34-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11	2014-08-26	공사대금(농장)	40,000,000	이000	양○○	137-13-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12	2014-08-28	교재비-몰편	2,095,000	열000	문○○	122-19-XXXXX	수기계산서 발급(몰편)
13	2014-08-28	교재비-킨○○○	3,400,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14	2014-09-18	화장실 타일 공사	1,626,000	디000	임○○	131-34-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15	2014-09-26	교재비-몰편	2,010,000	열000	문○○	122-19-XXXXX	수기계산서 발급(몰편)
16	2014-09-26	교재비-킨○○○	3,246,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17	2014-10-20	소방전기공사-대 ○○○	4,300,000	대000	김○○	128-8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18	2014-10-30	교재비-몰편	2,019,500	열000	문○○	122-19-XXXXX	수기계산서 발급(몰편)
19	2014-10-30	교재비-킨○○○	3,768,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20	2014-11-19	전기공사대금-대 산전기	2,000,000	대000	김○○	128-8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21	2014-11-27	LED TV2대, 공기청정 기등	5,830,000	삼000	김○○	128-86-XXXXX	전자세금계산서 사후 발급(2016-11-01)
22	2014-11-27	교재비-킨○○○	3,658,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23	2014-12-19	화장실문 교체 공사대금	3,700,000	디000	임○○	131-34-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24	2014-12-24	한미가방	2,480,000	한000	한○○	137-16-XXXXX	간이영수증 발급
25	2014-12-24	교재비-킨○○○	3,592,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26	2015-01-15	전기보수공사외 1건	1,360,000	대000	김○○	128-8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27	2015-01-29	교재비-킨○○○	3,504,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28	2015-02-11	뒤틀터잔디공사	3,700,000	밀000	심○○	131-34-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29	2015-02-17	발표회의상대여 비	2,000,000	오000	심○○	131-19-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30	2015-02-17	발표회 영상	3,280,000	유000	최○○	137-19-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연번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비고
31	2015-02-25	다문화-킨○○○	3,785,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32	2015-02-26	현장학습상품 등	6,300,0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33	2015-03-27	C 물품	10,350,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34	2015-03-27	교재비-킨○○○	4,584,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35	2015-03-27	공사대금(농장)	30,000,000	헤000	최○○	142-03-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36	2015-04-29	교재비-킨○○○	5,066,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37	2015-05-28	교재비-킨○○○	4,166,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행사명목)
38	2015-06-19	컴퓨터 5대구입	3,875,000	삼000	김○○	128-86-XXXXX	전자세금계산서 사후 발급(2016-11-01)
39	2015-06-19	토○○○ 6건	6,022,2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0	2015-06-29	교재비-킨○○○	4,300,000	킨000	박○○	106-12-XXXXX	수기계산서 발급(독서논술프로 그램)
41	2015-07-10	조형물설치 공사대금	2,000,000	올000	최○○	211-0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2	2015-07-14	조형물설치 공사대금	3,000,000	올000	최○○	211-0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3	2015-09-14	토○○○ 물품대금	6,680,0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4	2015-09-17	외부공사대금	4,300,000	태000	김○○	108-0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5	2015-10-05	무등 7건	2,609,950	0000	김○○	122-17-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6	2015-10-26	앨범비	6,000,000	키000	김○○	605-12-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7	2015-10-27	공사대금(농장)	20,000,000	헤000	최○○	142-03-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8	2015-11-17	토○○○ 물품대금	5,315,0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49	2015-11-19	삼성 주방외 5 건	3,000,000	삼000	강○○	137-20-XXXXX	전자세금계산서 사후 발급(2016-11-28)
50	2015-12-04	미술용품, 놀잇감 구입	4,697,0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1	2015-12-11	유치원가방 300개구입	2,400,000	한000	한○○	137-1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2	2015-12-24	공사대금	3,000,000	두000	박○○	261-81-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3	2016-01-18	cctv 보수공사	3,200,000	선000	이○○	204-17-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4	2016-01-18	토○○○ 겨울왕구	4,851,0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5	2016-01-28	유노영상 DVD대금	3,180,000	유000	최○○	137-19-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7	2016-02-04	앨범, 졸업앨범	3,000,000	그000	진○○	609-11-XXXXX	전자세금계산서 사후 발급(2016-11-28)
58	2016-02-29	공사대금	15,000,000	그000	노○○	261-81-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59	2016-03-16	리본타이, 스케치북 등	7,313,600	토000	박○○	122-45-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60	2016-05-09	건물유지비 - 공사대금	5,000,000	대000	김○○	128-86-XXXXX	세금계산서 미발급
61	2016-05-26	2016년 회계기장료	3,500,000	베000	이○○	129-34-XXXXX	간이영수증 미발급
62	2016-06-24	에어컨구입, 설치비	2,741,500	(주)000	김○○	128-86-XXXXX	전자세금계산서 사후 발급(2016-11-01)
합 계			340,568,750				

2. (수기)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과세 합계표 확인 불가로 부가세 미신고 의심 내역

번호	거래일자	적 요	지급금액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비 고
1	2014-03-06	문집, 출석카드제작	2,114,000	유○○○	장○○	141-02-XXXXX	
2	2014-06-09	하늘전문공사대금	10,000,000	신○○○	김○○	130-21-XXXXX	
3	2014-07-01	옥상하늘정원 공사비	10,000,000	신○○○	김○○	130-21-XXXXX	
4	2014-07-18	하복대금	4,674,000	핑○○○	김○	204-25-XXXXX	
5	2014-10-10	공사대금(농장)	19,000,000	올○○○	최○○	211-06-XXXXX	
6	2015-02-04	3층 놀이시설공사	2,000,000	리○○○	강○○	132-11-XXXXX	
7	2015-02-17	공사대금(농장)	6,000,000	올○○○	최○○	211-06-XXXXX	
8	2015-02-17	원복대금	5,000,000	핑○○○	김○	204-25-XXXXX	
9	2015-02-26	놀이시설공사대금	14,000,000	리○○○	강○○	132-11-XXXXX	
10	2015-03-25	세면대공사등 공사대금	6,000,000	신○○○	김○○	130-21-XXXXX	
11	2015-04-28	앨범대금결제	5,434,000	그○○○	진○○	609-11-XXXXX	
12	2015-05-11	원복대금	6,443,000	핑○○○	김○	204-25-XXXXX	
13	2015-05-11	어린이날행사등-동 화나라	3,780,000	동○○○	김○○	137-06-XXXXX	
14	2015-06-19	공사대금	5,000,000	신○○○	김○○	130-21-XXXXX	
15	2015-09-25	공사대금	15,000,000	신○○○	김○○	130-21-XXXXX	
16	2015-09-30	공사대금(농장)	35,000,000	올○○○	최○○	211-06-XXXXX	
17	2015-10-06	이삭광고	3,000,000	이○○○	이○○	137-10-XXXXX	
18	2015-11-25	공사대금(농장)	18,000,000	올○○○	최○○	211-06-XXXXX	
19	2016-02-01	신광공사대금	20,000,000	신○○○	김○○	130-21-XXXXX	
20	2016-02-04	원복	4,000,000	핑○○○	김○	204-25-XXXXX	
21	2016-02-04	체육복.가디건	10,000,000	주○○○	장○○	110-06-XXXXX	
22	2016-02-04	공사대금	4,000,000	신○○○	김○○	130-21-XXXXX	
23	2016-03-16	체육복. 가디건	4,850,000	주○○○	장○○	110-06-XXXXX	
24	2016-03-31	유치원지하공사비	5,500,000	신○○○	김○○	130-21-XXXXX	
25	2016-04-08	화장실세면대등 의장공사	5,500,000	신○○○	김○○	130-21-XXXXX	
26	2016-06-16	벽철거등 공사대금	16,500,000	신○○○	김○○	130-21-XXXXX	
27	2016-06-16	공사대금	10,000,000	신○○○	김○○	130-21-XXXXX	
합 계			250,795,000				

[붙임2] 체험학습장(에○○○) 공사비 지급내역

연번	지급일자	적요	세출계정	지급액	지급대상	공사장소
1	2014-03-03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5,500,000	대○○○	에○○○
2	2014-06-24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20,000,000	이○○○	
3	2014-08-26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40,000,000	이○○○	
4	2014-10-10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19,000,000	올○○○	
5	2015-02-17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6,000,000	올○○○	
6	2015-03-27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30,000,000	해○○○	
7	2015-06-25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23,000,000	T○○○	
8	2015-09-17	외부공사대금	건물유지비	4,300,000	태○○○	
9	2015-09-30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20,000,000	올○○○	
10	2015-09-30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15,000,000	올○○○	
11	2015-10-27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20,000,000	해○○○	
12	2015-11-25	공사대금(농장)	건물유지비	18,000,000	올○○○	
13	2015-12-24	공사대금	건물유지비	3,000,000	두○○○	
14	2016-02-29	공사대금	건물유지비	15,000,000	그○○○	
합 계				238,800,000		

[붙임3] 체험학습장(에○○○) 사용 내역

연번	일자	체험학습명	대상	인원(명)
1	2014-05-02	어린이날 행사	전체원아	303
2	2014-06-05	에○○○○ 체험활동	전체원아	303
3	2014-06-27	에○○○○ 견학	전체원아	303
4	2014-11-01	부모참여수업"가을여행"	전체원아+학부모	303
5	2014-04-06	식목일 기념 텃밭 작물 심기	전체원아	303
6	2015-04-23	농장 체험학습	전체원아	303
7	2015-05-27	농장 체험학습	전체원아	303
8	2015-08-28	에○○○○ 체험활동-짱아찌 담그기	전체원아	303
9	2015-10-02	에○○○ 농장 견학	전체원아	303
10	2015-11-20	에○○○○ 김장담그기	전체원아	303
11	2016-04-01	에○○○ 견학-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전체원아	325
12	2016-05-20	에○○○ 견학-가루야 가루야	전체원아	325
13	2016-06-11	아빠 어디가	전체원아+아빠	430
14	2016-09-30	에○○○ 견학-밤 줍기	전체원아	325
15	2016-10-28	에○○○-가을 산길을 걸어요	전체원아	325
합 계				4,760

※ 전체 사용 인원수(추정인원) : 원아수 + 교원(담임 및 원장)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02,733,386원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요구·시정

제 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 청라새싹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4.3.1.~2014.8.31.까지, 원장 ○○○은 2015.4.6.~2016.2.29.까지, 원장 ■■■은 2014.10.2.~2015.2.28.까지와 2016.3.1.~현재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설립자겸 사무직원 ▲▲▲은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는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유치원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붙임] ‘경조사비 부당지급 내역’ 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경조사비를 교직원인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교직원의 팔순, 개인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회 총 5,140,000원을 지급하였고,

- 2016. 4. 28. 유치원 업무와 무관하고 해외에서 실시하는 ‘첼시 플라워쇼1)’ 참관을 명목으로 사무직원 ⊕⊕⊕의 연수비 대금 2,750,000원을 온○○○○(대표: 조○○)에게 지급하였고,

<뒷면 계속>

1) 1827년 시작된 정원 및 원예박람회로 영국왕립원예학회가 주관

- 2013. 12. 17. 승합차량인 레인지로버 이보크1)(Range Rover Evoque) 1대를 우○○○○○과 설립자 명의로 리스계약하고, 설립자 및 그 배우자 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사용하였으나, 유치원 업무용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1회 총 60,512,7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였고,

- 2013. 6. 5. 승용차인 벤츠 C200 CGI 1대를 메르세데스 벤○○○○○ 서비스와 설립자 명의로 리스계약하고, 설립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유치원 업무용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4회 총 37,080,63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사무직원 연수비 2,750,000원은 2016.11.26. ○○○○로부터 유치원 회계로 회수 처리함.

- 붙임 1. 경조사비 부당 지급내역 1부.
- 2. 차량리스료 지급내역 1부.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출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라며,

【시 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된 102,733,386원(추가 지급된 리스료가 있을 경우 추가 리스료 포함)은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시고,

【경고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자 “경고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③ ○○○○유치원 원 장 ■■■■
- ④ ○○○○유치원 사무직원 ▲▲▲
- ⑤ ○○○○유치원 사무직원 ○○○○

2) 영국 랜드로버사에서 제작한 컴팩트 럭셔리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붙임1] 경조사비 부당 지급내역

번호	일자	적요	지출	교직원 유무	지급사유(소명)
1	2014-03-24	소모품, 경조사비외	600,000	유	설립자 시모팔순 축의금
2	2014-05-09	경조사비	500,000	유	사무직원 모친칠순 축의금
3	2014-11-27	근조화환	80,000	무	○○유치원장 화환
4	2014-12-10	화환구입비	80,000	무	○○유치원 화환
5	2014-12-16	근조화환2개	160,000	무	○○/○○유치원 화환
6	2015-06-01	경조사비	800,000	유	교사 개인 병원비
7	2015-06-26	화환구입	80,000	무	학부모 출산 꽃바구니
8	2015-09-01	경조사, 형광등외5건	80,000	무	○○유치원장 자녀 결혼 화환
9	2015-09-01	화환구입	80,000	무	○○유치원장 부군상 화환
10	2015-11-20	주유비, 화환4건등	1,200,000	무	○○/○○/○○/○○/해돋이유 치원장화환및조의금
11	2016-04-06	경조사상여외2건	200,000	무	○○/○○유치원장화환및조의금
12	2016-05-11	경조사비	780,000	무	퇴직교사 결혼 및 문상 화환및 축,조의금
13	2016-06-02	경조사비	500,000	무	○○유치원장 자녀결혼 화환및축의금
합 계			5,140,000		

[붙임2] 차량 리스료 지급내역

1.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2.2D(3X루XXXX) 지급내역

연번	지급일자	적요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1	2014-03-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	2014-04-21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3	2014-05-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4	2014-06-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5	2014-07-21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6	2014-08-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7	2014-09-22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8	2014-10-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9	2014-11-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0	2014-12-22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1	2015-01-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2	2015-02-23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3	2015-03-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4	2015-04-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5	2015-05-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6	2015-06-22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7	2015-07-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8	2015-08-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19	2015-09-21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0	2015-10-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1	2015-11-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2	2015-12-21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3	2016-01-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70,750	우○○○○○	
24	2016-02-22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5	2016-03-21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6	2016-04-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7	2016-05-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8	2016-06-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29	2016-07-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30	2016-08-22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31	2016-09-20	업무용차량할부금	1,951,400	우○○○○○	
합 계			60,512,750		

2. 벤츠 C200 CGI(6X고XXXX) 지급내역

연번	지급일자	적요	지급액	지급대상	비고
1	2014-04-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3,980	벤○○○○○	
2	2014-05-26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3	2014-06-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4	2014-07-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21,260	벤○○○○○	
5	2014-08-25	업무용차량할부금	1,631,180	벤○○○○○	
6	2014-09-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7	2014-10-27	업무용차량할부금	1,520,360	벤○○○○○	
8	2014-11-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50,560	벤○○○○○	
9	2014-12-26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10	2015-01-26	업무용차량할부금	1,519,460	벤○○○○○	
11	2015-02-25	업무용차량할부금	1,760,690	벤○○○○○	
12	2015-03-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9,460	벤○○○○○	
13	2015-04-27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14	2015-05-26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15	2015-06-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16	2015-07-27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17	2015-08-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74,560	벤○○○○○	
18	2015-09-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19	2015-10-26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20	2015-11-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88,560	벤○○○○○	
21	2015-12-28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22	2016-01-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18,560	벤○○○○○	
23	2016-02-25	업무용차량할부금	1,551,460	벤○○○○○	
24	2016-03-25	업무용차량할부금	1,606,386	벤○○○○○	
합 계			37,080,636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5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7. .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의요구·시정

제 목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관계기관 : 청라새싹유치원
 내 용

유치원 원장 □□□은 2014.3.1.~2014.8.31.까지, 원장 ●●●은 2015.4.6.~2016.2.29.까지, 원장 ■■■은 2014.10.2.~2015.2.28.까지와 2016.3.1.~현재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고, 설립자겸 사무직원 ▲▲▲은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은 2014.3.1.~현재까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5조(과세기간),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의하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및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뒷면 계속>

- 그런데도 ●●●●유치원에서는 2014회계연도에 11,701,000원, 2015회계연도에 24,763,310원, 2016회계연도 6월까지 4,0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나 수령인, 개인별 지급액 등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연말정산 소득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

붙임 상여금 지급내역 1부.

조치할 사항

●●●●유치원 설립자는 향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상여금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 정】 2016년도 교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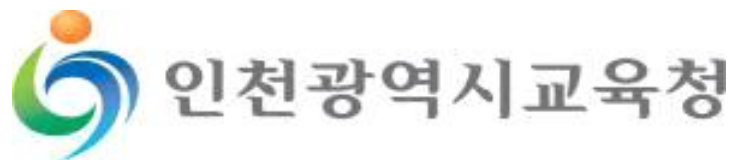
관련자 “주의요구”

- ①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② ●●●●유치원 원 장 ●●●●(현, 퇴직)
- ③ ●●●●유치원 원 장 ■■■■
- ④ ●●●●유치원 사무직원 ▲▲▲
- ⑤ ●●●●유치원 사무직원 ⊕⊕⊕

[붙임] 상여금 지급내역

번호	회계연도	일자	적요	지급액	비고
1	2014	2014-03-03	상여금	500,000	
2	2014	2014-03-07	상여금	751,000	
3	2014	2014-09-03	추석상여금	4,000,000	
4	2014	2014-09-04	추석상여금	3,000,000	
5	2014	2014-09-26	상여금	300,000	
6	2014	2014-11-04	상여금	700,000	
7	2014	2014-12-01	상여금	700,000	
8	2014	2014-12-08	상여금	350,000	
9	2014	2014-12-24	상여금	700,000	
10	2014	2015-02-02	상여금	700,000	
2014 회계연도 합계				11,701,000	
11	2015	2015-03-03	상여금	883,290	
12	2015	2015-03-31	상여금	700,000	
13	2015	2015-04-29	상여금	700,000	
14	2015	2015-05-28	상여금	1,000,000	
15	2015	2015-06-29	상여금	700,000	
16	2015	2015-07-16	상여금	2,000,000	
17	2015	2015-08-31	상여금	1,000,000	
18	2015	2015-09-18	상여금	1,700,000	
19	2015	2015-09-24	상여및소모품3건	2,000,000	
20	2015	2015-10-30	상여금	2,000,000	
21	2015	2015-11-30	판공, 상여외3건	1,300,000	
22	2015	2015-12-28	상여금	700,000	
23	2015	2016-01-28	상여금	700,000	
24	2015	2016-01-29	상여금	1,500,000	
25	2015	2016-02-23	상여금	4,004,020	
26	2015	2016-02-26	상여금	1,300,000	
2015 회계연도 합계				22,187,310	
27	2016	2016-03-02	상여금	800,000	
28	2016	2016-03-04	상여금	500,000	
29	2016	2016-04-29	상여금 3건	2,100,000	
30	2016	2016-05-31	상여금	600,000	
2016 회계연도 합계				4,000,000	

수사기관 사립유치원 행정통보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보고 [공개용]
(노벨, 소라, 청원, 여림, 해마루, 사랑과믿음)



[감사관 청렴팀]

수사기관 사립유치원 행정통보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보고 및 처분
(노벨, 소라, 청원, 여림, 해마루, 사랑과믿음)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 사립유치원 행정통보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해 적정 처분함으로써 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책무성과 사
립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진행과정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2016. 7. 4. 시행)관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정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불한
후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이 혼용된 교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매월 필요한 경비를 과도하게 수납 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수사착수(인천남부경찰서)
- 2017. 07. 12. 인천남부경찰서 행정통보(수사과-6415)
- 2017. 07. 31. 검찰 사건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감사관-6410)
- 2017. 08. 03. 검찰 사건 처분 완료
- 2017. 08. 18. 검찰 사건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감사관-6968)
- 2017. 08. 04. ~ 2017. 08. 30. 검찰 사건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
- 2017. 09.~ 검찰 사건 증거기록 검토 및 분석
- 2017. 10. 유치원 행정통보 사항 조치계획(안) 수립
- 2017. 11. ‘기소유예’ 처분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3.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일수	감사범위	비고
노벨유치원	2017. 11. 15. ~ 11. 16.(2일간)	2	수사기관 통보 범죄일람표 기간 (2012년 8월 ~)	
소라유치원	2017. 11. 17. / 11. 20.(2일간)	2		
청원유치원	2017. 11. 21. ~ 11. 22.(2일간)	2		
여림유치원	2017. 11. 23. (1일간)	1		
해마루유치원	2017. 11. 27. ~ 11. 28.(2일간)	2		
사랑과믿음유치원	2017. 11. 29. ~ 11. 30.(2일간)	2		
6개월	계	11		

감사결과 처분서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 비 공 개 ()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 정 상 법 조 치 방 법	회수	재 정 상 금 액 조 치	2,500,000원
수감기관	노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징계(감봉3월)요구·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
 관계기관 노벨유치원
 내 용

노벨유치원 원장 ◆◆◆(설립자)는 2012. 3. 1.~ 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노벨유치원 원장 ◆◆◆는 2012 ~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유치원 외부행사(현장학습, 소풍 등)를 진행하면서 외부행사 전문업체인 ■여행사(대표 ●●●)에 버스대절 등 경비를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2,5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

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 소유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노벨유치원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일람표 현황

- 교비착복금액: 5회, 총 2,500,000원
- 관련업체: ■여행사(대표 ●●●●)
- 범죄일람표

(단위: 원)

구분	업체명	계좌주	상대 계좌	인출금액	지급금액	잔액	거래날짜	은행명
지급		●●●●	현금	1400000	750,000	2617517	2012-10-31 11:18:48	농협
지급		●●●●	현금	600000	600,000	3310362	2013-05-09 10:50:31	농협
지급		●●●●	현금	450000	450,000	508362	2013-06-18 09:57:58	농협
지급		●●●●	현금	500000	500,000	1909098	2013-07-16 10:02:42	농협
지급		●●●●	현금	200000	200,000	5621488	2013-10-08 11:04:12	농협
합계				5회	2,500,000			

조치할 사항

노벨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시 정】** 다른회계로 전출된 2,50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 【경징계(감봉3월)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징계(감봉3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징계(감봉3월)요구”

노벨유치원 원장 ◆◆◆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노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12.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고·주의요구

제 목 지출결의서 세출예산 과목 임의 변경
 관계기관 노벨유치원
 내 용

노벨유치원 원장 ◆◆◆(설립자)는 2012.3.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는 2012.3.1.~현재까지 회계업무를 담당(2015.3.23.~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등) 에 따라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3조(결산) 제1항에 따라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 관할청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있다.[제59조(준용)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준용]

- 그런데도 노벨유치원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되고 해당 관할청에 결산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당시 일부 지출결의서 세출예산 과목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사유로 2017.11.15.~2017.11.16.에 예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정감사를 앞두고 [표]와 같이 4건, 총 2,500,000원의 지출결의서 관, 항, 목을 임의로 변경한 후 특정감사 현장에 자료를 비치한 사실이 있다.

[표] 노벨유치원 지출결의서 세출예산 과목 임의변경 내역

(단위: 원)

회계연도	지출일자	지출금액	채주	수사기관 제출 자료			특정감사 현장 비치 자료			변경여부
				관	항	목	관	항	목	
2013	04.22.	400,000	●●●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현장학습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	변경
	05.08.	700,000	●●●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현장학습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	변경
	06.13.	700,000	●●●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현장학습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	변경
	07.05.	700,000	●●●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	-
	10.02.	700,000	●●●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익자부담 교육비	학습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수학습 활동비	변경

조치할 사항

노벨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아래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의요구”

노벨유치원 원장 ◆◆◆

“경고요구”

노벨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2,515,000원
수감기관	소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

관계기관 소라유치원

내 용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소라유치원에서는 2012.10.4. ■■■■■교육(대표★★★)에서 와이즈브레인 교재 243권을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을 결제한 후 2012.10.22. 13,365,000원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2015, 2016년에는 □□□□(대표 ☆☆☆)로부터 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납품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금을 청구 받은 후 업체에서 3회, 9,1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2,51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소라유치원 설립자 ◆◆◆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소라유치원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일람표 현황

- 교비착복금액: 4회, 총 22,515,000원
- 관련업체: ■■■■■교육(대표 ★★★), □□□□(대표 ☆☆☆)
- 범죄일람표

(단위: 원)

구분	계좌	계좌주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거래내용	잔액	비고
출금		★★★	2012-10-22	인터넷	13,365,000	씨티소라	3,489,438	

합계 1회 13,365,000

(단위: 원)

구분	전달방법	수수일자	금액	계좌정보	비고
현금	원장실 현금전달	2015. 06.	3,050,000		□□□□
현금	원장실 현금전달	2015. 12.	3,050,000		□□□□
현금	원장실 현금전달	2016. 06.	3,050,000		□□□□

합계 3회 9,150,000

조치할 사항

【시정】 소라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다른회계로 전출된 22,515,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 조치금액	8,893,000원
수감기관	청원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징계(감봉3월)요구·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
 관계기관 청원유치원
 내 용

청원유치원 교사 ◆◆◆는 2007.3.26.~2012.10.3.까지 원감, 2012.10.4.~2015.4.23.까지 원장, 2015.4.24.~현재까지는 교사로서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청원유치원 교사 ◆◆◆는 2012~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유치원 외부행사(현장학습, 소풍 등)를 진행하면서 외부행사 전문업체인 ■여행사(대표 ●●●)에 버스대절 등 경비를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8,893,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청원유치원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일람표 현황

- 교비착복금액: 14회, 총 8,893,000원
- 관련업체: ■여행사(대표 ●●●●)
- 범죄일람표

(단위: 원)

구분	계좌	계좌주	상대계좌	인출금액	지급금액	거래내용	거래날짜	은행명
지급		●●●●	현금	300000	300,000		2012-08-28 12:40:19	농협
지급		●●●●	현금	405000	405,000		2012-09-13 09:35:37	농협
지급		●●●●	현금	450000	450,000		2012-10-22 12:10:08	농협
지급		●●●●	현금	540000	540,000		2012-12-04 10:41:58	농협
지급		●●●●	현금	600000	600,000		2013-02-25 11:07:42	농협
지급		●●●●	현금	4558000	1,518,000		2013-05-09 10:48:44	농협
지급		●●●●	현금	980000	980,000		2013-05-24 14:27:47	농협
지급		●●●●	현금	550000	550,000		2014-04-28 10:25:05	농협
지급		●●●●	현금	1200000	1,200,000		2014-07-23 09:53:21	농협
지급		●●●●	현금	450000	450,000		2014-10-24 15:49:34	농협
지급		●●●●		450000	450,000	청원유 쥬라기	2015-04-30 15:52:02	농협
지급		●●●●		450000	450,000	청원유 쥬라기	2015-10-08 10:36:32	농협
지급		●●●●		600000	600,000	청원유 쥬라기	2016-02-22 14:31:56	농협
지급		●●●●		400000	400,000	청원유 쥬라기	2016-11-08 09:35:55	농협

합계 14회 8,893,000

조치할 사항

청원유치원 설립자(재단법인 ㉠㉠학원 이사장)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시 정】 다른회계로 전출된 8,893,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 【경징계(감봉3월)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징계(감봉3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징계(감봉3월)요구”

청원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금 상액	3,150,000원
수감기관	여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징계(감봉3월)요구·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
관 계 기 관 여림유치원
내 용

여림유치원 원장 ◆◆◆는 1999.3.10.~2015.2.28.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 하였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여림유치원 원장 ◆◆◆는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유치원 외부행사(현장학습, 소풍 등)를 진행하면서 외부행사 전문업체인 ■여행사(대표 ●●●)에 버스대절 등 경비를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1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여림유치원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일람표 현황

- 교비착복금액: 3회, 총 3,150,000원
- 관련업체: ■여행사(대표 ●●●●)
- 범죄일람표

(단위: 원)

구분	계좌	계좌주	상대계좌	인출금액	지급금액	잔액	거래내용1	거래날짜	은행명
지급		●●●		400000	400,000	3048362	여림유	2013-04-05 15:16:06	농협
지급		●●●		3900000	1,800,000	6446362	여림유 환불	2013-04-23 13:45:41	농협
지급		●●●		2000000	950,000	5796362	여림어유 환불	2013-05-16 15:19:03	농협
합계				3회	3,150,000				

조치할 사항

여림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시 정】** 다른회계로 전출된 3,150,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 【경징계(감봉3월)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징계(감봉3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징계(감봉3월)요구”

여림유치원 원장 ◆◆◆(“퇴직불문”)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비공개 ()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4,461,000원
수감기관	해마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징계(감봉3월)요구·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

관계기관 해마루유치원

내 용

해마루유치원 교사 ◆◆◆(설립자)는 2012.3.1.~현재까지 유치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해마루유치원 교사 ◆◆◆는 2012~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유치원 외부행사(현장학습, 소풍 등)를 진행하면서 외부행사 전문업체인 ■여행사(대표 ●●●)에 버스대절 등 경비를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4,46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해마루유치원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일람표 현황

- 교비착복금액: 14회, 총 4,461,000원
- 관련업체: ■여행사(대표 ●●●●)
- 범죄일람표

(단위: 원)

구분	계좌	계좌주	상대계좌	인출금액	지급금액	잔액	거래내용1	거래날짜	은행명
지급		●●●		400000	400,000	7159	해마루유 환불	2012-08-30 09:20:14	농협
지급		●●●		250000	250,000	1107517	해마루 환불	2012-11-09 14:13:13	농협
지급		●●●	현금	400000	400,000	699597		2014-03-04 14:38:47	농협
지급		●●●	현금	700000	600,000	3259477		2014-06-17 09:40:21	농협
지급		●●●	현금	300000	300,000	4939903		2014-07-14 09:25:14	농협
지급		●●●	현금	200000	200,000	1007903		2014-09-01 10:44:49	농협
지급		●●●	현금	400000	400,000	9495566		2014-10-24 15:48:39	농협
지급		●●●	현금	100000	100,000	1069186		2015-01-05 09:59:13	농협
지급		●●●	현금	500000	500,000	2969186		2015-02-13 09:16:13	농협
지급		●●●	현금	300000	300,000	1709392		2015-05-06 10:17:00	농협
지급		●●●		100000	511,000	1818309	해마루유 환불	2015-10-06 15:01:19	농협
지급		●●●		100000	100,000	1,818,309	해마루유 환불	2015-10-06 15:01:19	농협
지급		●●●		600000	100,000	9737432	해마루 에듀피	2016-05-12 15:49:44	농협
지급		●●●		300000	300,000	4104405	해마루유 환불	2016-10-04 10:31:14	농협

합계 14회 4,461,000

조치할 사항

해마루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시 정】** 다른회계로 전출된 4,461,0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고,
- 【경징계(감봉3월)요구】** 아래 관련자에게 경징계(감봉3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경징계(감봉3월)요구”

해마루유치원 교사 ◆◆◆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비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3,338,400원
수감기관	사랑과믿음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	회신기일	2018. .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

제 목 사립학교법 위반
 관계기관 사랑과믿음유치원
 내 용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사랑과믿음유치원에서는 2014~2016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교재를 구입하면서 ○○교육(대표 ★★★)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3,338,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실운영자 ◆◆◆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사랑과믿음유치원 사립학교법 위반 범죄일람표 현황

- 교비착복금액: 10회, 총 13,338,400원
- 관련업체: ○○교육(대표 ★★★)
- 범죄일람표

(단위: 원)

구분	업체명	계좌주	상대 계좌	인출금액	지급금액	잔액	거래날짜	은행명
지급			이체		1,080,000		2015-02-23	
지급			이체		30,000		2015-08-25	
지급			이체		2,908,800		2016-01-27	
지급			이체		3,322,800		2016-02-29	
지급			이체		369,200		2016-02-29	
지급			이체		761,400		2016-03-25	
지급			이체		1,510,000		2016-06-02	
지급			이체		925,200		2016-06-24	
지급			이체		874,800		2016-09-01	
지급			이체		1,556,200		2016-10-06	

합계 10회 13,338,400

조치할 사항

【시정】 사랑과믿음유치원 설립자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다른회계로 전출된 13,338,400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